

9월15일 (화) 조간용 입니다



# 보도자료

▶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과장 박성희  
서기관 편도인

▶ 2009.9.14(월) 배포  
▶ 총 5 쪽 (사진없음)

TEL : 2110-7254  
E-MAIL : doinpyun@molab.go.kr  
F A X : 504-203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알림마당<e-노동뉴스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 수요자 중심,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한다

- 노동부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-

- 노동부는 9.15(화)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.
- 노동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,
  - 지난 5.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발전전략\*를 입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  - \* '09.5.27,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회의시 「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안」(관계부처 합동) 보고
- 우선, 실업자훈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들이 훈련비용 계좌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'직업능력개발 계좌제'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규정\*을 마련하였다.
  - \* 계좌제 적합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, 훈련생 자비부담 등
- <참고> 직업능력개발계좌제 : 실업자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담을 거쳐 가상의 계좌(1년간 200만원 한도, 자비부담 20%)를 발급하고,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
- 다음으로 직업훈련이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

있도록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(Sector Council)가 직업 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, 이들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\*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.

\* 업종별 직업훈련수요 조사, 자격 및 직업훈련기준 개발·보급,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업종별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

<참고>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(SC : Sector Council) : 주요 산업별로 업종단체, 대표기업, 관련 학계, 전문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 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기구(현재 기계·전자·e-biz·자동차·조선 등 19개 SC 운영 중)

- 그리고,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국가는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현재 노동부 외에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('09년 중앙부처 훈련예산 1.7조원, 지방자치단체 432억원)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  - 앞으로는 전 부처 및 지자체에서 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실시능력·훈련성과 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.
- 노동부는 이외에도 이번 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고, 기능대학법을 통합하는 등 법 체계도 대폭 정비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-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“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훈련수요자인 근로자와 기업, 지역과 산업계의 참여와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, 시장수요에 꼭 맞는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<붙임>

##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조문별 주요내용

### □ 법 목적 제정리(안 제1조)

- 기능대학법과의 통합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의 목적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포함
  - \* '08년 「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」(국경위)을 반영하여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통합

### □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(안 제4조)

-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

### 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신설(안 제5조)

- 국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·지원하기 위한 시책\*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  - \* 사업주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,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,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,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반 구축,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, 훈련과 자격의 연계 등
-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

### □ 사업주단체·근로자단체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책무 신설(안 제6조제4항)

- 근로자단체, 사업주단체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노력(산업별 직업훈련 수요조사 등)을 하여야 함

### □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명확화(안 제7조)

-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### □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(안 제14조)

- 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\*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
  - \* 산업별 인력수급·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·분석, 자격·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·보급,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

### □ 고용보험법의 중복 해소(안 제16조 및 제19조)

- 제2장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(사업주·사업주단체 등·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·직업능력개발단체) 및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정비

### □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·운영 규정 정비(안 제20조)

-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보완하여 규정
  - 노동부장관은 실업자 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적합한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
  -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등에 대하여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

□ **훈련과정의 인정취소·위탁계약의 해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(안 제32조~제36조)**

- 훈련과정의 인정취소, 위탁계약의 해지와 섞여서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별도 조항으로 분리·통합하여 정비

□ **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 정비(안 제39조)**

- 노동부 이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(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평가하기로 협의한 경우에 한함)
- 노동부장관이 외부 전문기관(비영리법인 등)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

□ **기능대학법 통합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(안 제41조~제54조)**

-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통합함에 따라 현행 기능대학법을 폐지하고 동 법의 주요규정을 개정안에 포섭
  - \* 제40조(기능대학의 설립), 제41조(과정의 구분), 제42조(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), 제43조(학칙), 제44조(교원 등의 종별·자격 및 정원), 제45조(교원 등의 임용·정년·복무 등), 제46조(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·장비의 활용), 제47조(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 등), 제48조(수업료 등의 징수), 제49조(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), 제50조(인가의 취소 등), 제51조(감독), 제5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, 제5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